

충청북도문화상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 안	
번 호	365

제출년월일 : 1994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를 널리 발굴 시상하여 충북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도록 하고 또한, 현행 조례중 불합리한 부문을 보완·개선 운영함으로써 문화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(수상대상자 : 조례 제2조제1,2항)

- 수상대상 자격을 "충청북도내에 당해년도 9월 1일 현재 5년이상 거주하는 자 (과거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9월 1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) 와 타시도 거주자로서 도내의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"로 하고
-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"그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부문의 문화상도 다시 받을 수 없다"로 함

(수상부문 : 조례 제3조제3,5호)

- "예술부문"을 "문화예술부문"으로, "새마을운동부문"을 "지역개발부문"으로 명칭 변경

(간사와 서기 : 조례 제7조제2항)

- "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"로 함

□ 붙 임

1.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

2. 신·구조문대비표

3. 참고자료

○ 시·도별 수상자격현황

○ 시·도별문화상 부문별현황

충청북도문화상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문화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(수상대상자) ①문화상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내에 당해년도 9월 1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하는 자(과거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9월 1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)와 타시도 거주자로서 도내의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.

②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그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부문의 문화상도 다시 받을 수 없다.

제3조제3호증 "예술부문"을 "문화예술부문"으로 하고, 동조 제5호증 "새마을운동부문"을 "지역개발부문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중 '간사와 서기는 문화예술과 소속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'를 "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○ 충청북도문화상조례증개정조례(안)

현 행	개 정
제2조 (수상대상자) ①문화상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내에 당해년도 10월 1일 현재 5년이상 거주하는 자(과거 5년이상 거주하면 자가 10월 1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)로 한다.	제2조 (수상대상자) ① - - - - - - - - - - 9월 1일 - - - - - - - - - - (- - - - -)와 1일 - - - - - - - - - - -)와 타시도 거주자로서 도내의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.
②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.	② - - - - - 그 수상부문 은 물론 다른부문의 문화상도 다시 받을 수 없다.
제3조 (수상부문) 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과 같다.	제3조 (수상부문) - - - - - - - - - - 1. - - - - - 2. - - - - - 3. <u>문화예술부문</u> 4. - - - - - 5. <u>지역개발부문</u> 6. - - - - -
제7조 (간사와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.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예술과 소속공무원 중에 서 도지사가 임명한다.	제7조 (간사와 서기) ①- - - - - - - - - - ②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.